

이정원 CPA 월간 뉴스레터

06.2018 MONTLY NEWSLETTER

2018년 6월호 (2018-6)

CONTENTS

a. 인사말

b. 세무정보

- 세금보고 및 기록을

얼마동안 보관을 해야
하나요?

- IRS 감사 절차?

c. 책 소개

d. 광고

인사말

안녕하세요? 이정원 회계사입니다.

뉴스레터를 통해 오래간만에 인사 드립니다.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세금보고 시즌으로 인해 뉴스레터를 발행을 못 해 죄송합니다. 다시금 세무정보 및 사업을 운영하신데 중요한 사항들을 뉴스레터를 통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이정원 CPA 드림

< 세무정보 >

세금보고 및 기록을 얼마동안 보관을 해야 하나요?

세금 감사란 세금보고에 기입된 내용들을 영수증과 인보이스, 증빙 서류를 대조하는 과정입니다. 따라서 매입뿐 아니라 매출에 대한 기록도 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.

일반적으로 IRS가 세무감사를 실시 할 수 있는 법적 시효는 실제 세금보고를 신고한 날로부터 3년이고 본래 신고 마감일보다 이전에 세금보고를 했다면 3년 후 4월 15일이 됩니다. 예로 2017년도 세금보고서를 2018년 3월 31일에 했다면 2021년 4월 15일 까지 세금보고서 상에 보고된 소득 및 지출 경비 내역을 보관하여야 합니다.

하지만 법정 시효가 다음과 같은 경우 6년이나 그 이상으로 늘어나 6년정도 세무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.
납세자가 전체소득의 25% 이상 축소 보고를 할 경우: 이 경우 세무감사를 실시 할 수 있는 법적 시효는 3년에서 6년으로 늘어 납니다. 법적 시효는 6년으로 늘어 나지만 실제로는 해당 감사 년도에 앞뒤로 한해씩 추가 세무감사를 실시 합니다. 예로 2016년도 세금 보고서를 세무감사 결과 25% 이상을 누락 됐다고 판단 했다면 2015년과 2017년도 세금 보고서를 감사 하는것으로 종료를 합니다.

법망을 피할 목적으로 세무 보고서를 허위로 기재 한 경우 세무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는 법적 시효는 무기한입니다. 10년이 지난 세금보고서라도 허위로 보고를 되었을 경우 언제든지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. 결론적으로 일반적으로 3년이지만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다면 6년치의 기록을 보관해 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.

IRS 감사 통계 및 절차?

IRS 는 세금보고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해 세금보고에 대한 감사를 실시합니다. 심사대상이 된다고 해서 반드시 납세자가 오류를 범했거나 정직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. 2016년 기준 총 1.1 Million 세금보고가 감사 대상이 되었으며 총 세금보고의 평균 0.5%의 숫자입니다. 하지만 이건 평균 수치이며 보고된 FORM 과 소득에 따라 5.2% 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.

IRS 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감사 대상을 선별 합니다.

1. 부당 탈세 거래 및 IRS 가 획득한 정보를 통해 선택이 됩니다. 예로 내부 고발자를 통해 증빙을 있을 경우 감사 대상에 선택이 됩니다.
2. 컴퓨터 프로그램은 각 신고서에 대한 “점수”를 부여 합니다. 과거 유사한 신고서에 대한 IRS 의 경험을 바탕으로 탈세 가능성을 대한 평점을 매깁니다. 예로 자영업자는 SCHEDULE C 를 통해 보고를 할 경우 근로소득만 보고하는 사람보다 감사대상에 선택 가능성성이 높습니다.
3. 세무보고의 소득이 IRS 에 신고된 내역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:
4. 비즈니스 파트너, 투자자 그리고 거래처 등으로 연루 되어 있는 경우 심사대상으로 선택 될수 있습니다.

세무 감사는 3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.

- 1) 서신 감사 (Correspondence Audit): 우편을 통해 감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간단하고 짧고 가장 일반적인 감사입니다. 2017년 기준 총 감사의 70.8% 가 서신감사를 통해 진행이 되었습니다.
- 2) 사무실 감사 (Office Audit): 서면 감사보다 좀 더 복잡한 감사로 주로 1개 이상의 사항이나 1개년도 이상의 세금보고가 될 수 있습니다.
- 3) 실지 감사 (Field Audit): 감사증 제일 복잡한 감사로 경험 많은 감사원에 의해 진행이 됩니다. 세금보고에 근거로 사용된 재무제표, 장부 기록등으로 검토 합니다.

부양가족 세금공제

세법에서의 부양가족은 자녀 또는 친척으로 구분되며 이 구분에 따른 국세청에서 제시하는 여러 조건에 부합되어야 합니다. 자녀로서 부양가족이 해당 되려면 다음 조건에 부합되어야 합니다. 자녀는 납세자의 자식 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의 자식들인 조카들도 해당 될 수 있습니다. 자녀의 나이는 19세 미만이어야 하며 풀타임으로 대학을 다닌다면 24세 미만까지도 가능합니다. 납세자는 자녀의 생활비의 반 이상을 도와주어야 하며 년중 6개월 이상을 함께 거주를 했어야 합니다. 학교, 군대, 병원 등으로 떨어져 있는 기간은 예외로 이기간 동안은 함께 거주한것으로 인정해 줍니다. 부모님이나 성인자녀는 친척으로서 부양가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. 조건은 다른 납세자의 부양가족으로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소득이 \$ 4,050 미만이며 일년동안 함께 거주 했어야 합니다. 부모님의 경우는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됩니다.

부양가족에 해당되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아 세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. 2018년부터 트럼프 세제 계편을 통해 인적공제가 없어지지만 부모님과 같이 거주 할 경우 Refundable Credit 및 부양가족을 통해 세율이 정해 지므로 정확한 부양가족 판단이 필요 합니다.

< 책 소개 >



인생을 바꾸고 싶으면 습관을 바꿔야 한다. 아리스토텔레스는 일찍이 서기 전 300년 “우리의 존재는 우리가 변복해 하는 행위의 모습이다. 탁월함이라 단일한 행위가 아니라 습관에 의해 만들어 진다고 했다. “1%의 원리”라는 책은 1% 씩 습관을 바꿔나가면 인생에 커다란 차이를 가져온다는 원리를 담고 있다. 아주 작은 변화들이 성공 가능성을 엄청나게 높여준다는 내용이다.

하루 24 시간의 1% 인 14 분동안만 어떤 1%를 바꿔야 할지 생각할 것을 권합니다. 예로 현재 하는 일의 좋은 점 3 가지를 꼽아본다. 그리고 10년후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 적어본다.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지금 해야 할 것 하나를 정한다. 지난 12 개월동안 되돌아 보는 시간을 갖는다. 성공과 실패를 가려본다. 사소한 일에 격차지 말고 무시하는 법을 배워라. 작은 것들에도 웃고, 실수와 실패도 즐기는 법을 배워라. 도달할 수 없는 것을 찾아 혜매게 해고단하게 한다. 목표를 향해 다음의 1%를 내딛는 것에만 집중합니다. 인생은 자동차 헛들과 같아서 살짝만 움직여도 방향이 완전히 바뀐다. 오늘 하루 14 분 동안 사업체 성공과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.

6 월의 중요한 Date

날짜	회계 법인 업무	고객에 요청사항 및 노트
6/15/18 (금)	5 월 달 Payroll Tax 납부	5 월달 은행 Statement 를 5/11 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
6/20/18 (수)	5 월달 Sales Tax & COAM 계산 및 납부	5 월달 세일즈 정보 혹은 은행 Statement 를 5/16 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
6/30/18 (토)	Tobacco License Renew 마감	담배를 판매를 하시는 업체이면 주정부에 Tobacco license 를 6/30 일 까지 Renew 를 하셔야 합니다.

광고

- 6 월 한달 동안 고객 방문의 달로 정했습니다. 혹시 사업체 방문을 통해 상담을 받고 싶으신 고객들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